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22 선고 2022가단51758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9. 22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9,367,502원 및 그중 9,367,445원에 대하여 2022. 5. 9.부터 2022. 7. 4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가.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21. 5. 2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6. 8. 접수 제127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근거 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홍도

별지